

#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승인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이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대상

### 1) 공급규모

- 가.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72-1번지 일원
-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6층 8개동, 총 5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총 54세대

###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10% 범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A		84B		84C		합 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장애인	경기도	4	(20)	2	(10)	3	(15)	9	(45)
		서울특별시	3	(15)	2	(10)	3	(15)	8	(40)
		인천광역시	3	(15)	1	(5)	3	(15)	7	(35)
	국가유공자		3	(15)	2	(10)	3	(15)	8	(40)
	장기복무 제대 군인		3	(15)	2	(10)	3	(15)	8	(4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5)	2	(10)	2	(10)	7	(35)
	중소기업 근로자		3	(15)	2	(10)	2	(10)	7	(35)
<b>합 계</b>			<b>22</b>	<b>(110)</b>	<b>13</b>	<b>(65)</b>	<b>19</b>	<b>(95)</b>	<b>54</b>	<b>(270)</b>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 ※ 주택형태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분양승인 전으로 자세한 사항은 분양승인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6.07.10.(금)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회신	2026.07.14.(화) 14:00까지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공문참조)
특별공급 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2026.07.20.(월) 09:00~17:30
	견본주택 방문청약	2026.07.20.(월) 10:00~14:00
당첨자 발표	2026.07.28.(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계층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자격확인 서류)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 지참 시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등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자</b>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b>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b>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b>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 서류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인 “소형·저가주택등”은 2024.12.18.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주택또는 분양권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주택 또는 분양권등”</th> </tr> </thead> <tbody> <tr> <td>-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td> <td>- 비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td> </tr> <tr> <td colspan="2">※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b>합니다.</li> </ul>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비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비아파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무주택세대구성원</th> </tr> </thead> <tbody> <tr> <td>가. 주택공급신청자</td> <td>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td> </tr> <tr> <td colspan="2">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td> </tr> <tr> <td colspan="2">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td> </tr> <tr> <td colspan="2">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td> </tr> <tr> <td colspan="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td> </tr> </tbody> </table>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입주자 저축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b>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불필요</b>)</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li> </ul>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b>자격요건 /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ul> </li> <li>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li> </ol> </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li> </ul>
--------------------	---

<b>추천 기관부서</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50%;">관련 법규</th> <th style="width: 30%;">해당 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 <td>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b>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b>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b>,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이전기관 특별공급 제외)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b>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b>하며,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li> </ul>
-----------------	--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여야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청약신청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특별공급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타 유형 특별공급으로 전환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li> </ul>
-------------	--

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7.10.(금)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견본주택 1644-8890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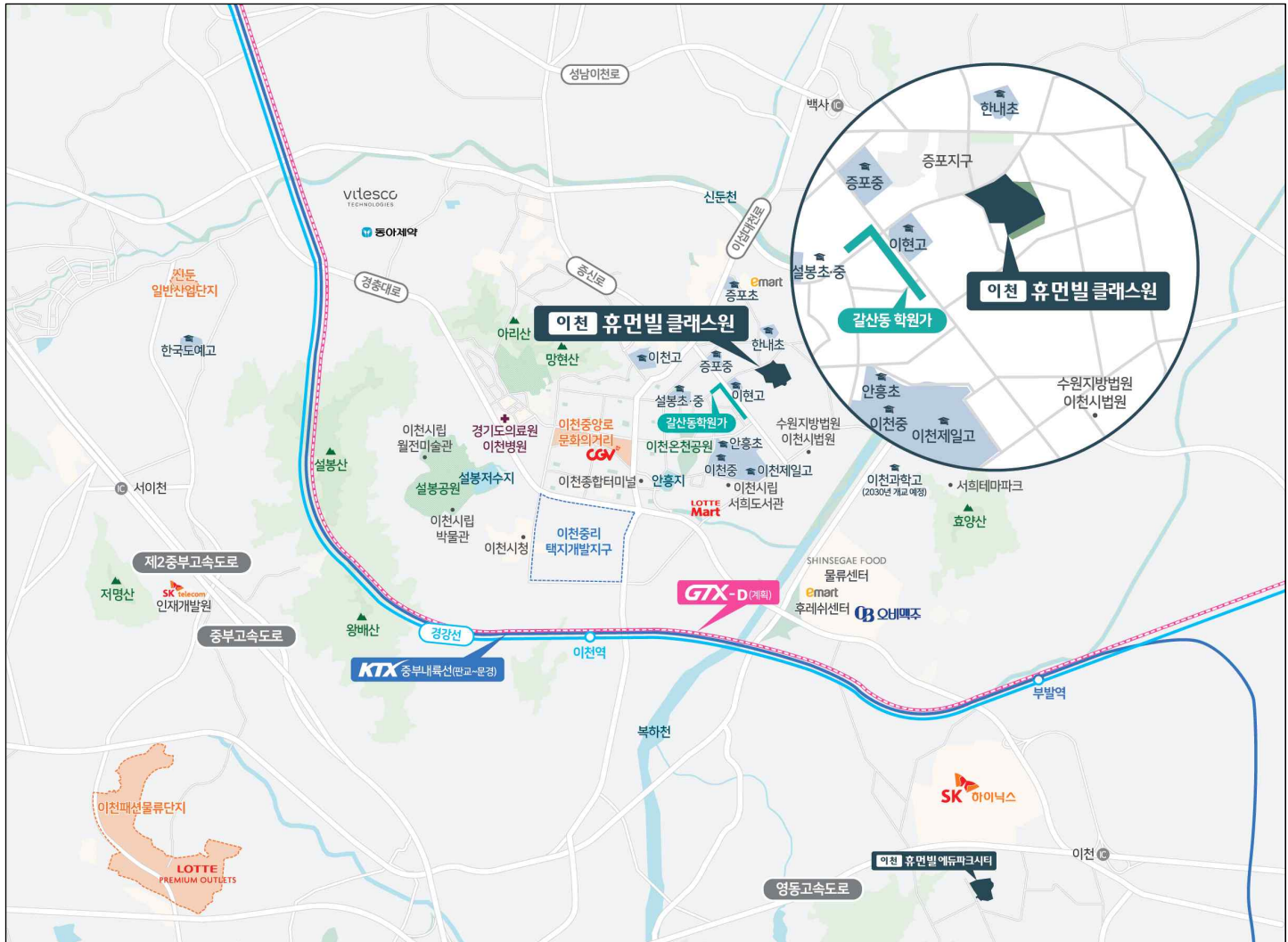
- ※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167
분양문의	1644-8890
홈페이지	<a href="https://www.이천휴먼빌클래스원.com">https://www.이천휴먼빌클래스원.com</a>



### ※ 사업지 위치도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학교 등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